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와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함)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,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되고, 공사의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사업 수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댐상류 지역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규정(제14조 개정)

공사가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할 근거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댐 상류지역과 물환경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(제2조, 제15조 등 개정)

공사는 상수도,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일반적 하수도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댐사용권·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”을 “댐사용권·수도시설관리권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댐 종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)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댐 종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

1. 댐의 계획홍수위선(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)이 속하는 소권역 중 댐의 종류에 위치하는 지역
2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

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.

1. 수질오염방지시설(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.)의 설치, 사용 및 유지·관리
2. 하수도의 설치, 운영·관리(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에 한한다.)

제15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물·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”을 “물·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법 제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”를 “법 제9조제1항제1호·제2호”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수자원개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”을 “수자원개발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사용권 등의 출자가액)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출자하는 <u>댐사용권·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</u> 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·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.	제2조(사용권 등의 출자가액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댐사용권·수도시설관리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지역의 범위)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 1. 광역상수원의 상류 하천 및 그 1차 지류(支流)의 인근 지역 2. 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	제14조(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관리 사업의 종류)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 1. 댐의 계획홍수위선(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)이 속하는 소권역 중 댐의 상류에 위치하는 지역 2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
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광역
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
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
역 (생 략)

제15조(실시계획 승인신청) ①
(생 략)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
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
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
는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
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
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
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
야 한다.

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

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물환
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업으로 한다.

1. 수질오염방지시설(「물환경
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
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.)

의 설치, 사용 및 유지·관리

2. 하수도의 설치, 운영·관리
(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「하
수도법」 제19조의제1항에 따
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
위탁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
·관리 업무에 한한다.) (현행
과 같음)

제15조(실시계획 승인신청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----.

1. ~ 11. (생략)

12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7조
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
서류 및 도면(법 제9조제1항
제4호의 사업만 해당한다)

1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31조(부당이득금의 산정) ① 법
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
금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
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
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
또는 사용료(이하 “요금등”이라
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
다.

② (생략)

제32조(요금등에 관한 규정) ①
(생략)

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
라 요금등의 산출방법, 징수절
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
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
는 지체 없이 물·수자원개발시
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
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12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부당이득금의 산정) ① --

----- 제1항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요금등에 관한 규정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물·수자원개발시
설 또는 그 수면-----

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
제35조(대집행 권한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<u>법 제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</u>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.	제35조(대집행 권한의 위탁) ① - ----- <u>법 제9조제1항제1호·제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국고보조)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<u>수자원개발시설</u>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<u>하수종말처리시설</u> 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.	제39조(국고보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자원개발시설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41